#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75

발의연월일 : 2021. 2. 26.

발 의 자 : 윤영덕ㆍ기동민ㆍ김승남

김승원 • 박찬대 • 박홍근

송갑석 · 양향자 · 이규민

이형석 · 조오섭 · 홍정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 거나 교육부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점차 증가 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다방면에서 제시되고 있음.

그 중 하나로써 2020년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융자 용도의 자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청산지원계정을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종전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3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한국사학진홍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은"을 "사학지원계정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를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로 한다.

-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은"을 "사학지원계정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삭제하며,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

- 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19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생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①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
	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u>기금은</u>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u>사학지원</u>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계정은
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u>1. 정부의 출연금</u>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
	에 따른 잔여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
	<u>그</u> 므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	<u>③</u> <u>제1항제1호 및 제2항</u>
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제1호의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	
(計上)하여야 한다.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다.

1. ~ 3. (생략) 3의2.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 | <삭 제> 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 6. (생략) <u><신</u>설>

제19조의4(계정의 구분) 제19조제 3호의2에 따른 융자의 용도로 사용할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 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제1항-----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 다.

제1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 계정은----------.

1. ~ 3.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 금의 융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삭 제>

제21조(자금의 융자) ① 제19조 제21조(자금의 융자) ① 제19조